

피해자 지침서

~범죄피해를 당하신 분에게~

이 지침서는 피해를
당하신 분이나 그 가족분들에게

●경찰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사건발생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이용가능한 지원제도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자입니다.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경찰서

과

담당자

전화번호



나가사키현 경찰

형사절차의 흐름

경찰

사건발생

경찰에 신고·110번 신고

수사개시

사정청취
증거품의 제출
현장검증(실황조사) 입회

범인(피의자)의 특정

임의수사
(체포하지 않음)

체포

석방

사정청취
증거품의 확인 등

서류송치

신병송치

검사에게 서류와
증거품을 인계하는 것

검사에게 범인을 서류 및
증거품과 함께 인계하는 것
(48시간이내)

검찰청

석방

구류

계속해서 범인의 신병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
(최대20일간)

검사의
사정청취

검사의 처분결정

불기소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기소(피고인)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약식명령청구
(서면심리에 의하여
벌금이나 과료를 명하는
재판)

공판청구
(공개재판)

공판

증인출정

법원

약식명령

판결

지원요원이 당신을 돕습니다 !

경찰에서는 사건발생 직후부터 담당 지원요원(경찰관 등)이

- 수사활동중의 동행
-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나 요청에 대한 대응
- 지원제도의 설명·수속
- 관계기관의 소개·인계

등을 합니다.

담당수사관이

-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경우의 수사상황
-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는 범인의 이름 등
- 사건 송치 및 검찰청의 처분결과 (기소·불기소)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범인이 소년인 경우에는 알려 드리는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 가족을 잃으신 분.....사체검안서료·시신운구비
- 상해 등을 입으신 분..... 초진료·진단서료
- 성범죄피해를 당하신 분..... 초진료·진단서료·
검사비용·긴급피임비용 등
- 일시적으로 대피가 필요하신 분.....숙박시설 사용료

등을 공비으로 지불해 드립니다.

다만, 지불받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참가제도

살인, 상해 등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람을 사상케 한 사건 등의 피해자나 가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참가인』이 되어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에 출석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증인이 되거나 범인(피고인)에게 질문하거나 사실 또는 법률적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리전문가가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후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으세요?

경찰에서는 상담원나 나가사키현 임상심리사회소속의 상담원등이 카운슬링을 합니다.

- 잠을 잘 수 없다, 식욕이 없다.
- 학교나 일을 하러 갈 수 없다
- 가족들의 눈치가 다르다.



등 불안한 일이 있으시면 담당지원요원에게 신청해 주세요.

카운슬링비용은 공비로 지불해 드립니다. 다만, 지불받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관계기관으로의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지원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
- 시청에 절차나 상담을 하러 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이 걱정되는 경우, 경찰로부터 관계기관에 대해 피해자분의 관련정보나 사안개요, 요구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에서의 지원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단법인 나가사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나가사키현 공안위원회로부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조기지원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가사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경찰에서 대응할 수 없는 내용의 상담에 대해서도 센터의 지원담당자가 대응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 피해자지원에 정통한 변호사소개
 -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소에의 동행
- 등을 실시합니다.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제도

『피해자참가인』이 된 피해자나 가족은 재판출석이나 피고인질문 등의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재산능력이 일정기준(200만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피해자참가변호사)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보수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손해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유죄선고를 한 후, 이어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심리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형사절차의 성과를 이용하는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사건과는 별도의 절차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범죄피해자의 입증부담이 경감됩니다.



범죄피해급부제도

살인이나 상해등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중상해·장애※1

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국가가 일시금으로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1 중상해란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입원 3일 이상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입니다. PTSD 등의 정신질환 인 경우에는 요양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또한 그 증상의 정도가 3일 이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를 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족간의 피해
-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는 경우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산재보험 등의 공적보상을 받은 경우



급부금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경찰담당자가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수사에 대한 협조요청



범인을 체포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나 가족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정청취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경찰관)이 피해상황이나 범인의 모습 등에 대해서 자세한 사정을 묻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품의 제출

피해를 당했을 때에 입고 있던 옷이나 소지품 등을 범죄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품으로서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검증(실태조사) 입회

범죄사실 해명,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현장검증에 입회를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도중에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경우에는 담당수사관(경찰관)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